세종대 권농 실시와 농법 정리의 의의*

염 정 섭**

1. 머리말
2. 수령 중심의 권농 실시
3. 조선 농법 정리의 실행
4. 『농사직설』 편찬의 의의
5. 맺음말

초록: 조선왕조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필요한 생산활동 즉 農業을 중심으로 世宗代에 『농사직설』이 편찬된 배경과 『농사직설』 편찬의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세종대에 이르러 완성된 형태가 자리잡은 농정책에서 수령은 특히 권농을 직접 수행하는 책무를 짊어지게 되었다. 수령은 자신을 보좌하는 勸農과 監考 등의 직임을 두어 권농을 실행하였다.

조선 왕조 개창 이후 조선의 서적 편찬 사업 가운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사직설』이 편찬된 것은 바로 그 시점에 조선(한국)의 농업기술을 정리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15세기 초반에 『農事直說』이 편찬될 수 있었다. 그리고 『농사직설』의 農事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農法 이외에 주술적인 택일법 등 다른 주장을 전혀 배제하고 있었다.

『농사직설』은 당대 하삼도 지역 老農의 농사 경험, 견문, 지혜를 문자화한 것이었다. 농민이 실제로 개발하고 전승한 농법을 기록한 것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직설』의 현실적인 보급 대상은 농민이 아니었다. 세종대 권농의 실시를 담당하는 책무를 지닌 수령과 수령으로 나서야 할 관료층이 바로 『농사직설』의 반포 대상이었다. 이점에서 세종대 권농의 실시와 『농사직설』 편찬이 서로 맞물리는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농사직설』은 편찬된 이후 조선의 농서 편찬에서 典範으로 간주되었다.

핵심어 : 수령, 권농, 농법, 노농, 농사직설

---

* 이 논문은 2019년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F-201904-001)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2020년도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사업-한국학 학술대회 지원'을 통해 인문학연구원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임.
** 한림대학교 사학전공 교수.

1. 머리말

조선 왕조의 世宗代(재위 1418년~1450년)는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의 측면에서 왕조의 체제를 갖추고, 나아가 발전을 모색하던 시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하여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국정운영의 기본틀을 세우고, 국왕과 관료들이 國政을 의논하면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 여부를 논의하는 구조를 만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 또한 경제적인 측면 특히 농업사적인 측면에서 世宗代는 貢法의 제정,[2] 『農事直說』의 편찬,[3] 測雨器의 발명,[4] 曆法의 개선[5]이라는 특기할 만한 업적을 중심으로 훌륭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6] 나아가 중세사회에서 근세사회로 이행하는 주요한 변화 발전의 시기로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世宗代에 이르러 농업생산, 농정책, 농업기술 등의 측면에서 조선 사회의 특징적인 요소가 자리를 잡았다. 왕조 지배체제 유지의 골간인 農業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체계화되었다. 농업생산과 관련해서 조선왕조의 중앙정부에서 수행한 農政策의 골간이 세종대에 자리를 잡았다.[7] 이에 따라

---

1) 崔承熙, 2002『朝鮮初期政治史硏究』, 지식산업사, 137-207면.

2) 金泰永, 1983『朝鮮前期土地制度史硏究』, 지식산업사; 李泰鎭, 1989「제2장 世宗代의 農業技術政策」,『朝鮮儒敎社會史論』, 지식산업사.

3) 金容燮, 1984「조선초기의 勸農政策」,『동방학지』 42; 金容燮, 2000「世宗朝의 農業技術」,『韓國中世農業史硏究』, 知識産業社; 金容燮, 1988『朝鮮後期農學史硏究』, 一潮閣; 李泰鎭, 1989「제2장 世宗代의 農業 技術政策」,『朝鮮儒敎社會史論』, 지식산업사.

4) 李泰鎭, 1989「제2장 世宗代의 農業 技術政策」,『朝鮮儒敎社會史論』, 지식산업사; 전상운, 1998『한국과학사의 새로운 이해』, 연세대학교 출판부.

5) 전상운, 1998『한국과학사의 새로운 이해』, 연세대학교 출판부; 전용훈, 2020「세종대 천문과 역법」,『조선시대 학문기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집현의 의미: 집현전 60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자료집.

6) 다음과 같은 논저를 참고할 수 있다. 李光麟, 1961『李朝水利史硏究』, 韓國硏究院; 李春寧, 1964『李朝農業技術史』, 韓國硏究院; 李景植, 1998『朝鮮前期土地制度硏究』(Ⅱ), 지식산업사; 강제훈, 2002『朝鮮初期 田稅制度 硏究』,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7) 세종대 농정책을 살핀 다음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金容燮, 2000 앞의 논문; 李泰鎭, 1984「세종대의 농업기술정책」,『세종조문화연구』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李泰鎭, 1986「세종대

농업생산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소를 파악하고, 그러한 요소들이 제자리에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조정하며, 궁극적으로 농업생산의 안정성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하고, 만약의 경우 凶年이 들게 되면 흉년을 극복할 수 있게 조력을 지원하는 등의 국가적 실행 과정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세종대에 우리나라 농업사의 최대 사건으로 비정할 수 있는 『農事直說』 편찬이 이루어졌다. 1429년(세종 11)에 간행된 『農事直說』은 편찬과정에 세종의 왕명이 크게 작용한 것이었다.[8] 그리하여 세종대의 권농정책, 농업정책 등과 연관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체로 『農事直說』을 조선의 농업기술을 정리한 최초의 官撰 農書로 커다란 의의를 지닌 것으로 파악하면서, 또한 主穀作物에 한정하여 경작법을 수록하고, 다른 작물의 경작법을 빠뜨린[9] '간략한 설명(直說)'이어서 내용이 소략하는 점, 선진적인 농법을 후진적인 농법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보급하려는 의도에서 편찬된 것[10]이라는 점 등으로 『농사직설』 편찬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본 논문은 『농사직설』 편찬의 전후 배경과 편찬의 역사적 의의를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려는 것을 연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농사직설』 편찬의 역사적 현실적 의의를 천착하기 위해 먼저 조선의 농정책의 정립 과정에서 수령 중심의 勸農이 이루어진 전후 사정을 살피고, 이어서 세종대에 조선(한국) 농법의 정리라는 과업이 실천된 상황을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사직설』 반포 대상자를 보다 선명하게 비정하면서 『농사직설』 편찬의 의의를 명확하게 제시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세종대에 이르러 권농의 중심적인 역할을 守令이 담당하게 되었다는 상황을 확인하고, 또한 세종대에 이르러 우리나라 農法의 정리가

의 천문연구와 농업정책」, 『애산학보』 4, 애산학회; 염정섭, 2003 「세종대(世宗代) 농정책(農政策)의 전개와 의의」, 『애산학보』 29, 애산학회.

8) 『農事直說』의 편찬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金容燮, 1986 「《農事直說》의 편찬과 기술」, 『애산학보』 4(1988, 『朝鮮後期農學史硏究』 재수록).

9) 『農事直說』의 項目으로 뽑혀 있는 작물을 보면 麻, 稻, 黍粟, 稷, 大豆, 小豆, 菉豆, 大麥, 小麥, 胡麻, 蕎麥 등 12종이었다.

10) 金容燮, 1988 앞의 책.

실행에 옮겨지게 된 전후 사정을 정리하여,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농사직설』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려고 한다.

조선 초기 지방통치체제의 변동과정 속에서 세종대 농정책의 골격이 완성되었다. 세종대에 수령이 권농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은 고려말, 조선초 지방통치체제의 변동과 깊이 관련된 것이었다. 고려의 지방통치체제에서 조선의 지방통치체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守令七事의 설정이었다. 또한 조선의 수령이 농경의례를 관장하는 것도 분명한 차이점이었다. 이러한 수령 중심의 권농실시는 필연적으로 수령과 관료들에게 農事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한 농사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정보를 농법(농업기술)의 측면에서 제공하는 책이 바로 『농사직설』이었던 것이다.

세종대에 조선 농법 정리가 이루어진 배경, 필요성, 필연성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살펴보자. 그동안 세종대 『농사직설』 편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고려말 『농상집요』 복각, 조선 태종대 『농서집요』의 편찬 등을 중심으로 농서 편찬의 흐름 속에서 『농사직설』 편찬 배경을 설명하였다.[11] 여기에서는 농업생산 현장에서 활용하는 농업기술의 채록, 수집, 정리를 『농사직설』의 주요 편찬 배경으로 살펴본다. 또한 『농사직설』이 農事 이외에 다른 성격의 지식과 정보를 배제하여 수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주목하여 정리할 것이다.

계속해서 『농사직설』의 편찬 의의와 관련하여 이 농서가 누구에게 보급, 반포되었는가라는 점을 주목할 것이다. 『농사직설』에 수록된 이른바 하삼도 지역의 선진 농법을 조선 팔도 지역의 농민에게 보급하고자 하였는지, 양계 지역의 농민에게 널리 알려주고 가르치려고 하였는지 따져볼 것이다. 이를 위해 『농사직설』의 보급, 반포 양상을 찾아볼 수 있는 주요 사료를 상세하게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농사직설서」의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의 함축적인 맥락을 정황 자료와 더불어 추론할 것이다.

---

11) 김용섭, 1988 앞의 책; 염정섭, 2000 「조선시대 農書 편찬과 農法의 발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 수령 중심의 권농 실시

세종대에 이르러 농업생산을 둘러싼 조정의 정책과 실행을 가리키는 농정책이 마련되고 실시되었다.[12] 세종대에 시행된 農政策은 農業이 王政의 근본이라는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것이었다.[13] 크게 권농, 감농, 황정 이렇게 3개의 주요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농정책의 주요한 실제 실행의 책무는 守令에게 부여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권농은 농사권장과 농사장려의 측면에서 국왕, 조정, 지방 각각 나름대로의 방안을 실시하였다. 실제 농민의 농업생산을 권장하고, 장려하면서 밀접한 접촉을 진행한 것은 바로 수령들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수령 중심의 권농의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을 정리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려에서 권농 직무를 수행하는 양상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고려시대에는 14세기 중후반까지 휴한법의 제약 아래에서 농업생산의 감독, 권장 등에 대한 행정적 사무가 일체 각 지방의 鄕吏들에게 거의 맡겨지고 있었다.[14] 고려 전기 이래 郡縣制와 部曲制의 복합적 영역구성에 기초한 지방통치 체제에서 국가는 향리층을 중심으로 편성된 향촌사회 운영질서를 인정하고, 향리 중심의 향촌사회 지배질서를 매개로 민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고려 국가의 향촌사회 통치방식은 결국 지방사회, 향촌사회의 농업생산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직접적 개입 대신 향리를 통하는 간접적인 통제와 연관될 수밖에 없었다.

고려초·중기에 勸農의 임무는 按廉使나 監倉使(양계 5도)가 겸하고 있었다.[15] 고려시대 지방관의 임무 여섯 가지에는 唐의 刺使 六條에 근거한 것으로 농업에 관한 것이 들어 있지 않았다.[16] 1018년(현종 9)에 새롭게 제정된 州府의 수령이

---

12) 세종대 농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염정섭, 2003 앞의 논문.

13) 各道에 『農事直說』을 반포하면서 世宗은 농사짓기가 王政의 근본임을 분명히 지적하였다(『世宗實錄』 권47, 세종 12년 2월 乙酉 〈영인본 3책 216면, 이하 '3-216'으로 표기함〉).

14) 이태진, 1989 앞의 책, 114면.

15) 『고려사』 권76, 식화지 권농조 "나중에 권농사를 따로 두었으나 충렬왕 13년 '傷民'의 폐단이 많아 다시 이전대로 돌리게 되었다."

16) 현종 9년의 新定의 '諸州府員 奉行六條' 察民庶疾苦, 察黑綏長吏能否, 察盜賊姦猾 察民犯

수행해야 할 직무의 주요 조목은 民庶의 疾苦, 長吏의 能否 등을 살피는 것이었다.[17] 직접적으로 민의 행적을 감독하거나 민을 접촉하여 王政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를 맡아 수행하는 長吏에 대한 감찰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고려 수령의 직무는 조선의 수령의 그것과 매우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고려시대의 경우 권농의 임무를 가지는 존재가 없지 않았는데, 도 단위의 직임인 按廉使나 監倉使의 兼務로 勸農이 부여되어 있었다.[18]

조선 왕조 수령의 직무는 크게 일곱 가지 사업 즉 守令七事로 구성되어 있었다. 조선의 수령칠사는 이미 태종대부터 수령에 대한 직무 평가 즉 褒貶의 기준으로 간주되고 있었다.[19] 그리고 수령에 대한 포폄이 6월과 12월로 나누어 시행되었을 때에도 수령칠사는 바로 그 기준이었다.[20] 수령칠사는 農桑盛, 戶口增, 學校興, 軍政修, 賦役均, 詞訟簡, 奸猾息 이렇게 일곱 가지로 구성된 수령의 주요 직무였는데, 農桑盛이 첫째 사항이었다.[21] 이와 관련하여 세종은 勸農의 사무를 수령에게 勸課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고 「勸農敎」를 반포하기도 하였다. 1444년

禁 察民孝悌廉潔 察吏錢穀散失(『고려사』 권75, 선거 3 銓注凡選用守令)

17) 『高麗史』 권75, 선거3 銓注凡選用守令; 諸州府員 奉行六條 察民庶疾苦, 察黑綬長吏能否, 察盜賊姦猾, 察民犯禁, 察民孝悌 廉潔, 察吏錢穀散失.

18) 이태진, 1989 앞의 책, 37-40면.

19) 『太宗實錄』 권12, 太宗 6년 12월 20일 乙巳 (1-381); 司憲府上禁駕前直呈及守令褒貶之法 …… 又啓 守令褒貶, 汎稱德行等第, 不論實效有無。 以故守令務求虛譽, 行媚於使臣過客, 取悅於品官鄕吏, 未有力行實效者。 今後以狀後七事考察, 分爲等第實效事目, 各於名下, 具錄申聞, 以憑黜陟。 一, 存心仁恕: 賑恤窮乏者幾人, 惠養老疾者幾人。 一, 行己廉謹: 裁省冗費某某事, 減損收斂某某事, 早暮劬勞某某事。 一, 奉行條令: 到任以來, 奉行某某事, 板牓張掛, 諭衆申明幾條。 一, 勸課農桑: 境內堤堰幾所內, 修築幾所; 任後勸民植桑椹, 每一戶幾株; 官種桑椹, 分給栽植, 每一戶幾株; 勸民造水車, 每一里幾具; 官造作分給每一里幾具, 勸耕幾; 合家疾病者, 令隣里耕耨, 待其平復, 償價者幾。 一, 修明學校: 學校幾間內, 修治幾間; 生徒幾人內, 讀書幾人; 通幾經幾人。 一, 賦役均平: 貢賦收斂, 某某事均平; 軍役差定, 某某事均平。 一, 決訟明允: 奴婢相訟幾, 道內(決絶)〔決折〕 幾道, 雜訟幾道。

20) 『世宗實錄』 권5, 世宗 1년 10월 26일 丁酉 (2-343); 自今諸道各官守令褒貶, 春夏等則六月十五日前, 秋冬等則十一月十五日前, 以爲定限。 且於啓本, 將守令七事實迹, 依曾降敎旨, 具錄以聞.

21) 『經國大典』 吏典 考課條 "七事 農桑盛 戶口增 學校興 軍政修 賦役均 詞訟簡 姦猾息"

에 하교한 「勸農敎」는 河緯地(1387~1456)가 代撰한 것인데,[22] 감사와 수령에게 농가에서 適時에 농사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심껏 권장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었다.[23]

그리고 조선은 모든 주부군현에 매 1面마다 在鄕의 한량품관으로서 勸農官을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24] 15세기 초반 세종대 무렵에는 중앙정부의 지방사회 지배장치로서 정비된 모습의 면리제 형태가 등장하였다. 앞서 面과 里의 용어는 여말부터 『高麗史』와 초기 實錄에 드문드문 나타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정비되는 것은 조선왕조 초기의 일이며 법전상에 구체화된 것은 『經國大典』에 등재되면서 부터이다.[25] 면리제가 정착되기 전인 여말선초에는 主邑 관내에 直村과 任內가 병렬해 있었고, 임내에는 다시 屬縣과 鄕所部曲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관할구역의 크기가 상이하였던 속현 및 속현과 동일한 취급을 받던 향소부곡 중에는 많은 里와 村을 보유하고 있던 것과 그렇지 못하고 임내 자체가 하나의 里와 村에 불과한 것들이 있었다. 또한 直村에는 이른바 自然村과 地域村이 구별지워졌고, 다시 村·里·面이 혼용되고 있었다. 이후 조선왕조가 개창되면서 군현제의 전면적인 개편이 진행되면서 주부군현이 각기 邑治를 중심으로 동서남북면과 같이 몇 개의 방향으로 面을 나누고 이러한 면 밑에 里洞村의 자연촌이 부속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면리제의 실시와 함께 종래의 향리 대신에 士族 또는 良民 출신의 勸農官 내지 監考·里正이 면리 단위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26] 권농관, 감고, 이정과 같은 면리제 운영담당층이 등장한 것은 고려왕조 시기 실질적인 군현통치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鄕吏가 조선초기 군현제 정비의 결과 군현의 하부조직인 面里

---

22) 河緯地, 『丹溪遺稿』, 「勸農敎書」(『韓國文集叢刊』 8, 542면).

23) 『世宗實錄』 권105, 세종 26년 7월 壬寅 (4-579).

24) 『太祖實錄』 권8, 태조 4년 7월 辛酉; 『成宗實錄』 권245, 成宗 21년 윤9월 甲申.

25) 『經國大典』 권2, 戶典 戶籍조항을 보면 "京外는 5戶를 1統, 5統을 1里로 하고, 몇 개의 里를 합쳐 1面을 만들고 統에는 統主, 里에는 里正, 面에는 勸農官을 각각 둔다"라고 되어 있다.

26) 李樹健, 1984 『한국중세사회사연구』, 일조각, 398-400면.

에서조차도 새로 대두한 勸農·里正들에게 밀려나 다만 지방관부의 行政使役人으로 전락된 역사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나아가 이러한 지방행정 담당층의 변화는 조선초기 지방통치의 진일보라 할 수 있다.

조선왕조는 왕조지배체제를 강력하게 구축하면서 농업문제를 '農桑은 王政의 근본이며, 學校는 風化의 源泉이라'고 하듯이 통치의 근본으로 인식하였다. 조선왕조는 중앙집권체제를 강화시켜 농정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농정과 관련하여 지방관의 소임으로 農桑이 크게 강조되었다. 새 왕조에서는 지방관의 所任으로 농정을 부과시키는 한편으로, 각 지방의 유력자들을 勸農官으로 삼아 수령을 돕게 하기도 하였다. 특히 태조 4년에 각급 주부군현으로 하여금 각 鄕의 한량품관 중 廉幹한 자를 권농관으로 뽑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것이 『경국대전』에서는 '매 일면마다 권농관을 두도록 한다'는 것으로 법제화되었다. 왕조초기에서 한량품관이란 곧 양반신분으로서 현직에 종사하지 않고 지방에 머물러 있는 부류였다. 지방 有志·有力者를 권농관으로 차정한 것은 앞의 수령칠사와 함께 농정이 이 시기에 새로운 지방통치의 과제로 자리매김된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외방의 守令을 보좌하는 勸農官[27]과 監考 등의 직임은 바로 현실적으로 가장 실제 농민의 농사일에 밀착해서 農政을 수행하는 자리였다.[28] 본래 農務를 감독하는 것은 勸農에게 맡겨진 것이었지만,[29] 수령은 監考를 차정하여 이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위임하고 하였다.[30] 그렇기 때문에 守令은 勸農과 監考를 差定하는 데 가능하면 성실하고 유식한 인물을 선택하도록 종용받았다.[31] 수령의 勸農은 실제로 국왕에게 下直 인사를 올리는 辭朝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世宗을 비롯한 조선의 국왕은 辭朝하는 守令과 監司를 引見하여 '農桑에 힘쓰고, 還上를 제대로 하라'고 당부하는 일을 잊지 않고 실행에 옮겼다.

---

27) 박진우, 1988「조선초기 面里制와 村落支配의 강화」,『韓國史論』20, 서울대 국사학과.

28)『經國大典』에 '每 一面마다 勸農官을 두도록 한다'는 것으로 법제화되어 있었다.

29) 李泰鎭에 따르면 고려에서의 勸農使는 道 단위의 직임으로 按廉使나 監倉使의 兼務였다(李泰鎭, 1989 앞의 책, 40면).

30)『世宗實錄』권89, 세종 22년 5월 戊午 (4-287).

31)『世宗實錄』권86, 세종 21년 7월 丁卯 (4-228).

세종이 수령에게 권농을 당부하는 사례를 찾아보면 1441년(세종 23년) 同福 縣監 河綱地 등이 하직 인사하자, 세종은 農桑을 勸課하는 것은 守令의 急務이지만, 권과할 때에 鞭撻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32] 수령은 예전의 諸侯에 비견되는 자리이고, 백성의 일을 국왕이 모두 직접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임명하여 보내는 것으로 간주되었다.[33] 耕種과 除草 그리고 收穫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農時를 맞이하게 될 때 농사 현장에 가까이 지내면서 이를 장려하거나 독려하고 나아가 농민을 어루만질 관리는 바로 守令이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조선이 개창된 이후 지방통치제제는 중앙에서 파견한 外官 즉 수령에게 집중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고, 이는 중앙에서 마련한 농정책 특히 권농의 현실적인 실행을 수령이 담당하는 것이었다. 수령은 권농관, 감고 등을 차임하여 권농의 실질적인 행사를 수행하였다. 결국 조선 초기 이래 수령은 이제 직접적으로 勸農을 비롯한 농정책의 실무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책무를 짊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령을 비롯한 관료들에게 農事, 農法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고 생각된다. 조선 전기 국왕들이 외방으로 나아가는 수령의 辭朝 자리에서 農桑에 대한 문답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을 상기하면 좋을 것이다.

3. 조선 농법 정리의 실행

조선 초기 세종대에 이르러 조선(한국)의 農法(농업기술)을 정리한 農書로 『農事直說』이 편찬된 전후 사정을 '조선 농법의 정리'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농사직설』의 편찬을 세종의 업적의 하나로 나열하는 것에서 벗어나 조선(한국)의 農法 정리가 바로 이 시기에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조선 농법

32) 『世宗實錄』 권93, 세종 23년 7월 乙卯 (4-351).

33) 『世宗實錄』 권38, 세종 9년 12월 乙丑 (3-104).

정리라는 작업이 어떠한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좀더 세밀하게 천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농사직설』의 편찬으로 이어진 조선 농법 정리 작업의 특징이 무엇인지 새롭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고려말 중국 元나라에서 편찬한 『農桑輯要』가 도입된 이후 경상도 합천에서 復刻되어 간행되었는데, 현재 『元朝正本農桑輯要』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조선 태종대에 이르러 『농상집요』에 수록된 농업기술을 조선의 농업여건 속에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농상집요』 抄錄書가 편찬되었는데, 바로 『農書輯要』이다.[34] 『농서집요』는 『농상집요』를 抄錄한 부분과 吏讀를 붙여서 번안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농서집요』는 편찬된 이후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태종대에 편찬된 『농서집요』가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의 왕명으로 『농사직설』이 편찬된 이유를 조선(한국) 농법의 정리의 절실한 필요성이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농사직설』 편찬의 필요성을 「농사직설서」의 다음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농사직설서」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비록 서문의 작성자는 鄭招이지만 실질적으로 서문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구절은 세종의 지시로 파악하는 것이 온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에 인용한 '五方風土不同論'은 실제로 세종의 입장, 주장이 담긴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삼가 생각하건대 太宗恭定大王께서 일찍이 儒臣에게 명하시어 옛날 農書에서 절실히 쓸 만한 부분을 뽑아서 鄕言으로 註를 붙여 板刻 반포하게 하여, 백성에게 농사에 힘쓸 것을 가르쳤다.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明君을 계승하여 정사에 힘을 써 더욱 民事에 마음을 두셨다. 五方의 風土가 같지 아니하여 곡식을 심고 가꾸는 법이 각기 마땅함이 있어, 옛 농서와 다 같을 수 없다 하여, 여러 道의 監司에게 명하여 州縣의 老農들을 訪問하게 하여, 지역에서 이미 시험하여 획득한 경험을 갖추어 아뢰게 하였다.[35]

---

34) 『農書輯要』에 대한 연구성과로 다음 논저를 참고할 수 있다. 金容燮, 「『農書輯要』의 農業技術」, 『朝鮮後期農學史硏究』, 一潮閣, 1988; 吳仁澤, 「朝鮮初期의 『農書輯要』 刊行에 대하여」, 『부대사학』 17, 부산대사학회, 1993; 李鎬澈, 「『農書輯要』의 農法과 그 歷史的 性格」, 『經濟史學』 14, 경제사학회, 1990; 吳仁澤, 「『農書輯要』를 통해서 본 조선 초기의 耕種法」, 『지역과 역사』 5, 부산경남역사연구소, 1999; 이종봉, 「朝鮮初期 施肥技術의 硏究」, 『지역과 역사』 9, 부산경남역사연구소, 1999; 염정섭, 「조선시대 農書 편찬과 農法의 발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0.

위 인용문에서 태종이 실행한 일은『農書輯要』의 편찬이었다. 元代의 農書인『農桑輯要』를 抄錄하고 吏讀를 붙여 간행한 것이었다.『농서집요』가 편찬되었음에도 세종이『농사직설』편찬을 명령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五方風土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었다. 世宗은 風土의 차이가 농업생산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農事直說』이 편찬되기 전부터 토로하고 있었다. 1424년에는 卞季良에게 每月마다 해야 할 農家의 일을 그림으로 그리고 글을 붙여서 자신에게 올리게 지시하기도 하였다. 세종 스스로 경계를 삼으려는 의도에서 詩經의 豳風과 無逸의 뜻을 이어받아 勸農을 잘 수행하려는 의도를 비친 것이었지만, 결국 風土의 차이에 따른 농업기술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 것이었다.[36]『농사직설』이라는 조선 농법의 정리 작업의 의의를「農事直說序」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五方 風土 不同論'에 의거한 농서 편찬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인식에 의거하여 조선(한국)의 농법을 처음으로 정리한 결과물이 바로『농사직설』이었다.

『농사직설』이 조선(한국) 농법의 정리작업 결과물이라는 점이 갖고 있는 의의를 좀더 천착하기 위해「농사직설서」에 보이는 다음 한 구절에 주목할 수 있다.

> 또한 臣 招(鄭招)에게 (諸道 監司의 보고를) 검토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하고 말의 차례를 다듬을 것〈詮次〉을 명하였다. 臣은 宗簿小尹 卞孝文과 더불어 들추어보면서 參考하여, 重複을 제거하고, 切要한 것을 取하여 하나의 編目을 撰成하였는데 農事直說이라 이름붙였다. 農事 이외에는 他說은 섞지 아니하고 간략하고 바른 것에 힘을 써서, 山野의 백성들에게도 환히 쉽사리 알도록 하였다.[37]

---

35)『世宗實錄』44권, 世宗 11년 5월 16일 辛酉 (3-181); 恭惟太宗恭定大王, 嘗命儒臣, 掇取古農書切用之語, 附註鄕言, 刊板頒行, 敎民力本。 及我主上殿下, 繼明圖治, 尤留意於民事, 以五方風土不同, 樹藝之法, 各有其宜, 不可盡同古書。乃命諸道監司, 逮訪州縣老農, 因地已試之驗具聞。

36)『度支志』外篇 권3, 版籍司 田制部一 勸農 事實 世宗 6년(1424년)

37)『世宗實錄』권44, 세종 11년 5월 辛酉 (3-181) 農事直說序; 又命臣招, 就加詮次, 臣與宗簿少尹臣卞孝文, 披閱參考, 祛其重複, 取其切要, 撰成一編, 目曰, 農事直說。農事之外, 不雜他說, 務爲簡直, 使山野之民曉然易知。

많은 연구자가 위 인용문에서 주목한 것은 “山野의 백성들에게도 환히 쉽사리 알도록 하였다(使山野之民曉然易知)”라는 구절이었다. 그리하여 『농사직설』에 수록된 하삼도 지역의 선진농법을 산과 들의 백성들에게 보급하려고 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곤 하였다.[38]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농사 이외에는 他說은 섞지 아니하고 간략하고 바른 것에 힘을 써서(農事之外, 不雜他說, 務爲簡直)”라는 표현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이 구절이 『농사직설』에서 수행한 조선(한국) 농법 정리의 특징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파악하기 때문이다.

「농사직설서」에서 農事 이외의 他說을 배제한다는 표현을 굳이 포함시킨 이유를 좀더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農書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에 따르면 당연히 農事에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을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위 구절에 보이는 ‘農事 이외의 他說을 배제한다는 표현’은 사족처럼 생각된다. 그런데 農書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변화되어왔다는 개념사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農事 이외의 他說을 배제한다는 표현’의 함축적 의미를 달리 파악할 수 있다. 즉 앞서 農書 또는 農書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는 서책의 내용이 農事 이외의 他說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추론을 세워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문제제기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은 달리 설명하면 農書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변화, 또는 農書에 포함되는 지식 정보의 성격 변화가 바로 『농사직설』 편찬을 통해 확연하게 나타났다는 역사적 인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위의 문제와 관련된 『농사직설』의 역사적 의의를 살피기에 앞서서 농서의 개념, 정의를 살펴보자. 농서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순하게 파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는 반성적인 검토가 필요하다.[39]

지금까지 農書는 대체로 농업기술, 농업생산과 관련된 지식을 정리한 책으로 파

---

38) 김상태는 『농사직설』이 함길도와 평안도의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편찬되었지만, 이를 전국의 관리들에게 나누어주어 이를 바탕으로 한 농업기술을 보급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김상태, 2010 「「農事直說」의 편찬과 보급에 대한 재검토」, 『한국민족문화』 36,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9면.

39) 農書의 개념에 관한 서술은 다음 논문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염정섭, 2014 「한국 농서 번역의 현황과 전망」, 『고전번역연구』 5, 한국고전번역학회.

악되었다. 그런데 농서 편찬에 대해서 오랫동안 農學 연구 성과로 農書가 편찬되었다는 인식이 주도적으로 학계에 통용되었다. 김용섭은 조선 후기에 사회경제적인 변화에서 농업문제가 중심이 되고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農學과 農書의 관계를 적시하였다.

> 農業問題는 대개 農政的인 문제와 農業技術問題로 구분되면서 연구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前者는 주로 田政에 관한 一聯의 制度的인 硏究로 나타나고, 後者는 주로 農業技術을 중심한 農學의 연구로서 나타났으나, 個 중에는 농정적인 문제를 함께 연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農學의 硏究成果는 農書로서 편찬되었는데, 農書를 중심한 이와 같은 농학이 이 시기에는 실로 왕성하였다.[40]

위의 설명은 조선시대의 農學을 농업(농업기술)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이라고 규정하고 그러한 농학의 연구성과를 農書로 파악한 것이었다. 농학의 연구성과를 농서로 파악하는 방식은 중국의 농서에 대한 개설적인 설명 논저에서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었다. 농학의 연구성과를 곧 農書로 보는 것은 현대적인 농서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도 일견 타당한 설명으로 수용되는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농서의 개념을 살펴본다.

農書 편찬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던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農家類의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漢書』「藝文志」에서 農家에 대해 "農家라고 하는 흐름은 대개 農稷을 맡은 관리의 직무에서 나온 것이고, 百穀을 播種(耕作)하게 하고, 耕種(農事)과 蠶桑을 권장하여, 이로써 衣食을 풍족하게 하는 것(農家者流 蓋出於農稷之官 播百穀 勸耕桑 以足衣食)"[41]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農家에 해당하는 것들은 농업생산, 농업기술 등을 관장하는데, 그 직무의 대표적인 부분은 '農事와 蠶桑을 권장하여, 이로써 衣食을 풍족하게 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었다. 달리 표현하면 농사의 권장, 감독, 그리고 그에 따른 의식의 풍요로움에 관련된 내용이 農家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는 좀더 명확하고 간략하게 표현하면 '農事를 통한 經世(국가·사

---

40) 김용섭, 1970「序言」,『朝鮮 後期 農學의 發達』, 한국문화연구총서2, 한국문화연구소, 8면.
41) 『漢書』「藝文志」 諸子略.

회 운영)'라고 압축할 수 있다. 諸子百家에 포함되는 여러 사상의 흐름이 결국 당대 국가와 사회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학술적 모색이라고 할 수 있고, 農家는 그것을 農事를 기반으로 추구한 것이었다.

經史子集으로 서적을 분류하는 四部分類法을 따르는 경우 農家類에 포함되는 책들이 현재의 農書의 개념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현재 古書를 소장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소장도서목록'에 農家類에 해당하는 서적들을 農書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지만 四部分類 子部 農家類에 묶여 있는 서적만 농서로 파악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의 王毓瑚는 子部 農家類에 포함된 것뿐만 아니라, 농가류 이외의 子部에 포함된 서적, 그리고 經部, 史部, 集部에 분류된 책 중에도 농서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42]

王毓瑚는 『中國農學書錄』라는 책의 凡例에서 본서에서 다루는 책을 "농업생산기술 및 농업생산과 직접 관계가 있는 지식을 講述한 著作으로 제한"[43]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農學書라는 제목을 붙이면서 자신이 검토한 서적들을 농학서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中國農學書錄』에서 370여 종의 農書, 農學書마다 간략한 해제를 붙여 놓았다. 그리고 책 뒤에 분류색인을 첨부하였는데, 農業通論, 農業氣象・占候, 耕作・農田水利, 農具, 大田作物, 竹木・茶, 蟲害防治, 園藝通論, 蔬菜及野菜, 果樹, 花卉, 蠶桑, 畜牧・獸醫, 水產 등 14항목으로 나누어 파악한 것이었다. 그는 가장 기본적인 작물의 경작법뿐만 아니라 蔬菜, 樹木에 대한 재배법, 水利, 農器具 등에 대한 것, 氣象에 대한 것도 농서, 농학서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日本의 農山漁村文化協會에서 간행한 日本農書全集[44]에서도 農書로 포함시킨 서적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한 것이었다. 일본농서전집의 경우 農事日誌, 特產(產品), 農產加工, 園芸, 林業, 漁業, 畜產・獸医, 農法普及, 農村振興, 開發・保全,

---

42) 王毓瑚 編著, 天野元之助 校訂, 1975『中國農學書錄』, 龍溪書社, 343-345면.

43) 王毓瑚 編著・天野元之助 校訂, 1975 앞의 책, 1면.

44) 日本農山漁村文化協會 홈페이지에서 『日本農書全集』를 소개하는 페이지 참조(http://www.ruralnet.or.jp/zensyu/nousyo/ 2020년 5월 30일 검색).

災害·復興, 本草·救荒, 學者의 農書, 繪農書, 地域農書 등에 해당하는 서적을 종합하여 농서전집으로 모은 것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서에 해당하는 서적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고 또한 농업기술에 해당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에 관련된 것도 농서의 범위에 넣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식, 정보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45] 특정 시기에는 경험적인 기술체계에 속하는 농업기술뿐만 아니라 농사의 성패를 초월적인 존재, 또는 주술적인 유감에 의존하는 術數(學)에 해당하는 지식과 정보의 체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서적도 농서의 범주 속에 포괄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吉日과 凶日을 선택하는 데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擇日書[46]와 애초에 점치는 행위와 깊이 연결되어 있던 曆書[47], 그리고 농업기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천하만물의 온갖 지식과 정보를 종합하여 분류하고 정리한 類書 등도 일부 농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정리해서 살펴보자면 후대에 農書, 曆書, 擇日書 등으로 나뉘어 불리게 되는 학문·기술의 종합적인 정리와 분류작업을 전대의 경우 오히려 農事, 즉 농민의 농업생산이라는 중심 고리를 통해서 전체적인 틀 속으로 묶어서 살필 수 있다고 생각된다.

農書가 農事에 채택한 농법, 농업기술 등을 담고 있다면, 曆書는 농사일을 해야 할 適時를 선택할 때 필요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擇日書는 농사일의 안정적인 수행과 동시에 가을 수확의 풍년을 祈願과 祈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

45) 농업, 농촌, 농민을 주요하게 다루는 지식, 정보는 農家, 農書, 農學의 차원에서 개념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46) 曆書는 또한 擇日術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데, 擇日術은 일정한 원리와 의미 부여를 통해 좋은 날을 선택하고 나쁜 날을 피하는 占術이라고 할 수 있다. 금재원, 2011「秦漢代 擇日術의 유행과 보편화 과정」,『中國古中世史硏究』25, 中國古中世史學會, 1면.

47) 吉凶日을 가리는 풍속은 날짜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册曆과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었고, 삼국시대에 이미 길흉일을 가려 행사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만태, 2009「한국 택일 풍속의 전승양상과 특징」,『한국정신문화연구』32-1(통권 114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77면.

따라서 어느 시기에 편찬된 농서에 해당되는 서적에 농서의 본질적인 지식와 정보 이외에 역서나 택일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낯선 장면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조선 후기에 편찬된『農家集成』등 많은 농서에 농작업의 吉日과 凶日이 수록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납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설명을 통해「농사직설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농사 이외에는 他說은 섞지 아니하고 간략하고 바른 것에 힘을 써서(農事之外, 不雜他說, 務爲簡直)"라는 표현에 나오는 '他說'에 대한 추정을 좀더 심도 있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他說'은 農法(농업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여타 분야의 설명으로 볼 수 있고, 위에서 언급한 바를 토대로 부연하자면, 길일과 흉일의 擇日이나, 풍년의 기원이나 기도와 연관된 術數와 관련된 설명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위에서 언급한「농사직설서」에 나오는 '간략하고 바른 것'이라는 구절의 의미는 농법의 내용을 가장 분명하게 서술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경험적인 농업기술에 의거할 때 올바른 것을 서술하였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대에 집현전 등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서적 편찬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에 앞서 태종대에 이루어진 讖緯, 術數와 관련된 서적을 불살라버린 일을 같이 주목해야 할 것이다. 1417년(태종 17) 11월 5일 태종은 書雲觀에 보관되어 있는 讖書를 불사르고, 京外에 사사롭게 간직하고 있던 서적들도 자수하여 바치게 하고 이들도 불사르도록 하교하였다.[48] 이와 같은 참위서, 술수서에 대한 소각 방침이 이어지면서 세종대 편찬사업은 역사서, 유교경서, 유교윤리·의례, 중국법률, 중국문학, 중국정치귀감서, 병서관계, 훈민정음·음운·언역관계, 지리관계, 천문·曆數관계, 의약관계, 농업기술관계 등 많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었다.[49]

---

48)『太宗實錄』권34, 太宗 17년 11월 5일 丙辰 (2-192); ○下敎禁讖書。 下旨禮曹曰: "讖緯術數之言, 惑世誣民之甚者也。 爲國者所當先去, 故已命書雲觀, 擇其妖誕不經之書, 付諸烈焰。自今京外私藏妖誕之書, 來戊戌年正月爲限, 自首顯納, 亦令燒去。如或定限不納者, 許諸人陳告, 照依造妖書之律施行, 將犯人家產, 告者充賞。

『농사직설』이 農事 이외의 他說을 수록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책이 1450년대로 편찬연대가 추정되고 있는 『山家要錄』[50]이다. 『산가요록』의 農書에 해당하는 기재내용에서 각 작물별 吉日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山家要錄』은 작물별 경작법을 서술하는 부분에 吉日을 표시하고 있는데, 특정한 작물을 파종하는 데 적당한 干支를 吉日이라 표시하고 있다. 『山家要錄』 果實 서술 부분을 보면 '諸果吉日'로 己巳, 丙子 등을 기술하고 있다.[51] 『山家要錄』보다 앞선 시기에 편찬된 『農事直說』에는 작물별 吉日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지 않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653년에 申泳이 편찬한 『農家集成』에 증보되어 수록된 『農事直說』에는 작물별 吉日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吉日 서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농사직설』, 『산가요록』, 『농가집성』의 차이가 바로 『농사직설』에서 農事 이외에 他說을 배제한 특징과 깊이 연관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농사직설』 편찬이 조선(한국) 농법의 정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중국 농서의 번안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조선의 풍토에서 축적된 농법의 정리가 필요하였고 이것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점을 지목할 수 있다. 또한 농서로 비정되는 여러 서책에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길일과 흉일의 擇日이나, 풍년의 기원이나 기도와 연관된 術數와 관련된 설명, 포괄적으로 보아 주술적인, 술수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農事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즉 農法(농업기술)을 집중적으로 정리한 농서의 편찬이 절실히 요구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49) 최승희, 1995 「2. 유교정치의 진전」, 『한국사 22-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76면.

50) 『山家要錄』은 채소, 수목, 약초 등의 재배법, 가축, 물고기, 벌 등의 생육법 등을 수록하고 있는 農書이고, 또한 각종 음식을 만드는 조리법 등을 소개 설명하고 있는 調理書이기도 하다. 김영진, 2004 「해제(解題)」, 『山家要錄』 고농서국역총서8, 농촌진흥청, 6면.

51) 『山家要錄』 諸果吉日: 己巳丙子戊寅己卯壬午癸未己丑辛卯戊戌己亥庚子丙午丁未戊申壬子癸丑乙卯戊午己未

4.『농사직설』 편찬의 의의

『농사직설』 편찬의 의의를 살피기 위해 「농사직설서」에 등장하는 民의 의미를 깊이 따질 필요가 있다. 앞에서 인용하였던 「농사직설서」에 보이는 다음 한 구절에 주목할 수 있다.

> 삼가 생각하건대 太宗恭定大王께서 일찍이 儒臣에게 명하시어 옛날 農書에서 절실히 쓸 만한 부분을 뽑아서 鄕言으로 註를 붙여 板刻 반포하게 하여, 백성에게 농사에 힘쓸 것을 가르쳤다.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明君을 계승하여 정사에 힘을 써 더욱 民事에 마음을 두셨다. 五方의 風土가 같지 아니하여 곡식을 심고 가꾸는 법이 각기 마땅함이 있어, 옛 농서와 다 같을 수 없다 하여, 여러 道의 監司에게 명하여 州縣의 老農들을 訪問하게 하여, 지역에서 이미 시험하여 획득한 경험을 갖추어 아뢰게 하였다.[52]

위 인용문을 보면 太宗이 『농서집요』를 편찬한 다음 "백성에게 농사에 힘쓸 것을 가르쳤다(敎民力本)."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농서집요』의 내용 서술이 漢文과 吏讀로 이루어져 향촌의 農民들이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없음이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농사직설서」의 여러 구절에서 民이 등장하고 있어 『농사직설』의 편찬 의도, 보급 대상 등으로 民이 지목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체로 「농사직설서」의 民을 일반적인 농민 또는 백성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漢文과 吏讀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농사에 힘쓸 것을 가르친 것으로 파악하고 넘어가는 것은 일차원적인 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한문에 접근할 수 없는 백성들(民)에게 『농서집요』와 『농사직설』을 가르친다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백성들에게 농사를 가르친다는 표현은 농사가 天下 國家의 大本이라는 점을 백성, 그리고 특히 관료들에게 강조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정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52) 『世宗實錄』 44권, 世宗 11년 5월 16일 辛酉 (3-181); 恭惟太宗恭定大王, 嘗命儒臣, 掇取古農書切用之語, 附註鄕言, 刊板頒行, 敎民力本。 及我主上殿下, 繼明圖治, 尤留意於民事, 以五方風土不同, 樹藝之法, 各有其宜, 不可盡同古書。乃命諸道監司, 逮訪州縣老農, 因地已試之驗具聞。

특히 勸農에 직접 솔선수범해야 할 守令 직책에 지근거리에 있는 관료들에게 대오각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장을 좀더 상세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農事直說』은 世宗 11년(1429년)에 편찬되었다.[53] 世宗은 1428년(세종 10) 윤4월에 경상도관찰사에게 왕명을 내려 평안도와 함길도에 전습시킬 만한 농법을 老農을 탐방하여 그 내용을 추려서 올리게 하였다.[54] 그리고 7월에는 忠淸道 全羅道 관찰사에게 경상 감사에게 내렸던 왕명과 동일한 내용을 命하였다.[55] 충청도와 전라도 관찰사에게 평안도와 함길도에 전파할 만한 농사 방법을 老農에게 물어서 요점을 간추려 상달하라는 명을 내린 것이었다. 이후 하삼도 관찰사의 보고를 기반으로 鄭招와 卞孝文이 이듬해 편찬한 결과물이 바로『農事直說』이었다.

『農事直說』은 세종대의 다른 서적 편찬과는 성격을 달리하였다. 그 점은『農事直說』의 編纂者로 이름이 올라 있는 鄭招와 卞孝文이 수행한 역할이 다른 편찬자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農事直說』의 기술적인 내용은 앞서 편찬과정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老農의 지식과 경험을 정리한 것이었다. 정작 편찬을 담당한 鄭招와 卞孝文이 한 일은 觀察使가 册子로 올린 농업기술의 내용을 세목별로 분류하고 정서하는 작업이었다. 그러한 작업을 鄭招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 또한 臣 招(鄭招)에게 (諸道 監司의 보고를) 말의 차례를 다듬을(詮次) 것을 명하였다. 臣은 宗簿小尹 卞孝文과 더불어 들추어보면서 參考하여, **重複을 제거하고, 切要한 것을 取하여** 하나의 編目을 撰成하였는데 이름하기를 農事直說이라고 하였다.[56]

鄭招와 卞孝文이 실제로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한 일이라고는 위의 인용문에

---

53)『農事直說』의 편찬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金容燮, 1986「『農事直說의 편찬과 기술」,『애산학보』4(1988,『朝鮮後期農學史硏究』재수록).

54)『世宗實錄』권41, 세종 10년 윤4월 甲午 (3-129).

55)『世宗實錄』권41, 세종 10년 7월 癸亥 (3-138).

56)『世宗實錄』권44, 세종 11년 5월 辛酉 (3-181) 農事直說序; 又命臣招(鄭招: 인용자) 就加詮次 臣與宗簿小尹臣卞孝文 披閱參考 祛其重複 取其切要 撰成一編目 曰農事直說.

나와 있듯이 “重複을 제거하고, 切要한 것을 取하는” 것이었다. 編纂者는 자료를 정리하는 作業者의 역할 정도를 수행하는 사람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農事直說』의 편찬이 鄭招나 卞孝文의 개인적인 업적으로 파악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農事直說』의 내용은 당대 하삼도 老農의 농업기술을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農事直說』의 기술적인 내용이 노농의 농업기술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 『農事直說』을 편찬한 목적도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農事直說』은 전적으로 국가적인 편찬 사업으로 만들어졌다. 王命에 의해서 편찬사업이 시작되었고, 또한 世宗의 뜻에 걸맞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世宗의 의지가 중요한 편찬의 계기였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農事直說』 편찬 목적도 세종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즉 世宗이 『農事直說』을 편찬한 목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世宗의 언급에서 보이는 『農事直說』 편찬 목적은 咸鏡道와 平安道에 下三道의 先進 農法을 전수하고자 하는 것이었다.[57] 世宗은 함경도와 평안도의 농업기술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農事直說』을 편찬한 후인 1439년(세종 21)에는 咸鏡道 富居縣에 『農蠶書』를 보내주고 있다.[58] 세종 14년 平安道經歷 朴孝를 引見할 때에 세종은 작년에 이미 『農書』를 頒賜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 지역의 水田에 커다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59] 그리고 이와 같은 세종의 관심은 『農事直說』의 편찬이 下三道 지방의 선진농법을 평안도 함경도 지방에 전수하려고 한다는 정초의 언급과 일치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世宗이 『農事直說』을 편찬한 의도 내지 목적을 兩界 지역에 선진적인 농업기술을 보급하려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모순을 내재하고 있다. 『農事直說』의 서문에 보이는 바와 같이 五方의 風土의 차이는 농업기술을 따로 정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요인이었다. 이 점을 『農事直說』에서는 中國과 朝鮮의 風土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이용하면서 『農事直說』 편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데 적용

57) 『世宗實錄』 권44, 세종 11년 5월 辛酉 (3-181) : 農事直說序.
58) 『世宗實錄』 권84, 세종 21년 3월 丁巳 (4-195).
59) 『世宗實錄』 권55, 세종 14년 정월 丁卯 (3-367).

하였다. 그런데 下三道 지역과 兩界 지역은 애초에 무시할 수 없는 농업여건의 차이를 노정하고 있었다. 下三道 지역과 兩界지역은 위도상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어서 양쪽지방의 농업상의 환경조건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것을 무시하고 하삼도의 농업기술을 함경도와 평안도지방에 전파할 수는 없었다. 즉 농업기술은 풍토적인 차이를 내재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下三道의 農法을 兩界지역에 그대로 통용시키려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세종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5세기 초반 이미 지역의 생산조건에 따라 생산성에 커다란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었다. 경상도와 전라도 沿海의 畓은 벼 1, 2斗를 파종하면 소출이 10여 石에 달하여 1結의 소출이 많으면 50·60石 적어도 20·30石을 내려가지 않았고 旱田 역시 비옥하여 소득이 많은 곳이었다.[60] 이와 같은 지역적인 생산성의 격차는 사실 지역에 특수한 농법 즉 지역농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61] 따라서 하삼도 지역의 농법을 양계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의지에서 『농사직설』을 편찬하였다고 파악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1438년(세종 20) 4월 平安道敬差官 朴根이 올린 單子條件에 들어 있는 南道의 의미에 대하여 음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시 박근의 단자조건에 의거하여 兵曹에서 올린 보고를 議政府에서 논의하여 재차 보고한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 一 本道(평안도, 인용자)에서는 南道 각 고을에 旱稻 종자 25석을 배정해 교환하되, 閭延·江界에 각기 10석, 慈城에 5석을 차례로 輸納하게 하고, 각기 그 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적기에 이르면 이를 파종하여 시험해 보도록 하옵소서.[62]

---

60) 『世宗實錄』 권49, 세종 12년 8월 戊寅 (3-252): 摠制河演 以爲……如慶尙全羅沿海邑 種稻一二斗(石의 잘못인 듯) 而所出 或至十餘石 一結所出 多則逾五六十石 小不下二三十石 旱田亦極膏腴 所出甚多 若京畿江原道 依山州郡 則雖種一二石 所出不過五六石.

61) 조선 후기 지역농법과 관련하여 '18세기 후반 地域農法의 구조와 특색'을 소개한 다음 논저를 참고할 수 있다. 염정섭, 2002, 앞의 책.

이 기사에 보이는 조목은 南道의 남쪽 各官에서 早稻 종자 25석을 확보하여 평안도 최북단 지역인 閭延과 江界에 각각 10석씩, 그리고 慈城에 5석을 보내어, 이를 해당 3곳의 수령이 적시에 파종하는 시험을 행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평안도 지역의 개발, 개척, 특히 徙民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南道'를 어느 곳으로 비정해야 하는지 따져보는 것이 요청된다. 南道의 일반적인 용례로 남쪽 지역, 또는 下三道로 파악해야 하는지, 아니면 평안도의 남쪽에 해당하는 군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러한 남도의 지역 비정에 따라서 위의 기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위 기사에서 早稻 품종 가운데 한반도 최북단 지역인 閭延·江界에서 15석을 수납하여 전국 각 지역에 적시에 파종하는 실험을 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등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방 한계선의 早稻 품종을 전라도와 경상도 등 가장 먼저 해빙되는 지역에 파종하는 방안까지 고안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지적하자면 위 기사의 남도는 평안도 남쪽 군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그 이유는 위 기사의 첫 부분에 '本道 南道'로 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도의 남도는 즉 평안도의 남쪽 各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평안도 南道의 各官에서 획득한 早稻種을 여연, 강계, 자성 등 보다 북쪽 지역에서 경작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 경종하게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정부에서 올린 내용에 대하여 세종이 윤허하였다. 평안도 지역 내에서 早稻種을 교환하여 耕種하는 것을 시험하게 한 것은 風土에 의거하여 벼를 재배하는 것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63]

농업여건의 지역적인 차이를 분명하게 당시에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62) 『世宗實錄』 권81, 세종 20년 4월 4일 丁巳 (4-139); 一, 於本道南道各官, 早稻種二十五石分定, 爲換閭延·江界各十石, 慈城五石, 次次輸納, 令各其官守令趁時耕種試驗.

63) 함경도의 경우 행정상으로는 單一道였지만 군사적으로는 南·北道로 나뉘어 있었다〈『역주대전회통』 병전, 99면 주)204〉.

世宗이 兩界 지역으로 선진농법을 전수하려는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王政을 주관하는 국왕으로서 관료를 포함한 모든 民을 敎化와 德治의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질적인 정책 추구 방향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世宗이 『農事直說』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편찬한 내면적인 목적은 농업기술의 정리를 통해 농업생산을 보다 안정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조세수입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었다면, 이는 군현에서 王命의 代行者로서 일반적인 통치뿐만 아니라 敎化와 덕치를 담당하면서 이와 더불어 勸農도 수행하고 있던 守令과 잠재적인 守令과 다름없는 관료 일반에게 『농사직설』의 주요한 내용을 눈여겨보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世宗은 『農事直說』을 편찬한 후 곧바로 다음해인 1430년(世宗 12) 2월에 諸道監司, 州府郡縣, 京中의 時職과 散職 2品 이상 官員에게 『農事直說』을 나누어 주었다.[64] 世宗은 『農事直說』의 사급대상을 우선적으로 八道 전체로 잡아 놓고 있었다. 물론 세종은 『농사직설』을 함경도와 평안도 지역에 보급시키려는 의도를 잠재우고 있지 않았다. 1437년(세종 19) 2월에 양도 감사에게 王命을 내려서 『농사직설』에 의거하여 경종하도록 권장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때 세종은 가을에 수확한 정도를 따로 보고하도록 지시하면서 권농의 실제적인 확인 작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65]

세종은 평안도와 함경도에 『농사직설』을 보급시키려는 지시를 내린 직후인 1437년(世宗 19) 7월에 다시 諸道監司에게 傳旨하여 『農事直說』의 내용을 농민들에게 잘 일깨워 주도록 지시하였다.[66] 이때 세종은 그동안 『농사직설』을 권장하는데 미흡하였음을 지적하고 새로 인쇄한 것을 각 군현에 보내어 農民을 가르치고 勸課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세종은 이렇게 『농사직설』의 보급에 관심을 중점을 두는 왕명을 내리면서, 蝗蟲 등 蟲災를 해결하는 방법을 『農桑輯要』 등을 직접 검토

64) 『世宗實錄』 권47, 세종 12년 2월 乙酉 (3-216); 頒農事直說 于諸道監司州郡府縣及京中時散二品以上 上曰 務農重穀 王政之本 故予每惓惓於農事也.

65) 『世宗實錄』 권76, 세종 19년 2월 乙亥 (4-55).

66) 『世宗實錄』 권78, 세종 19년 7월 辛亥 (4-93).

하여 찾아서 제시하기도 하였다.[67] 이와 같이 『農事直說』을 편찬한 뒤에 頒賜하고 보급에 힘쓰는 양상을 살펴보면 『農事直說』을 양계 지역만 염두에 두고 편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양계지역을 위한 작업의 결과가 『農事直說』이었다면 諸道의 州府郡縣에 모두 頒賜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결국 『農事直說』은 양계지역을 위한 특별한 작업의 결과가 아니라 諸道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農事直說』의 편찬이 농업기술을 정리하여 이를 전체 농민에게 보급시키려 한 것이었고 따라서 이와 같이 널리 효유시키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지방의 守令, 勸農官 등이 보다 구체적인 『농사직설』 보급 대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차원에서 議政府가 1446년(세종 28) 『農事直說』과 「農事敎書」 등으로 勸農할 것을 건의하는 상황에서도 『農事直說』을 兩界 지역 이외의 곳에도 널리 보급시키려고 한 점[68]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조선이라는 왕조의 君主인 세종의 관점에서 또는 세종의 왕명에 의해서 작성된 「농사직설서」에 등장하는 民이란 王政과 仁政을 통해 보살핌의 대상이 되는 모든 臣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농사직설서」에 보이는 민은 양반 관료부터 노비 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었다. 이념으로서의 王土사상과 王臣사상의 발현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농사직설』의 편찬 의도와 보급 대상으로서의 民은 농민으로 한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농사직설』 편찬의 현실적인 의의를 찾는 데 다음 세 가지 사료에 대한 음미를 필요로 한다. 첫 번째는 『농사직설』의 반포를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왕명이고, 두 번째는 함길도와 평안도 관찰사에게 내린 왕명에서 『농사직설』을 언급한 기사이며, 세 번째는 早種을 강조하면서 『농사직설』와 수령의 권과를 강조한 기사이다.

첫 번째 기사는 다음과 같은데, 이는 『농사직설』을 널리 관원들에게 반포하였다는 내용이다.

---

67) 『世宗實錄』 권78, 세종 19년 7월 辛亥 (4-93).

68) 『世宗實錄』 권111, 세종 28년 2월 甲子 (4-656).

『農事直說』을 諸道의 감사와 州郡府縣 및 京中의 時職과 散職 2품 이상의 관원에게 반포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농사에 힘쓰고 곡식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王政의 근본이므로, 내가 매양 농사에 정성을 쏟는 것이다." 하였다.[69]

위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농사직설』의 직접적인 수령자, 달리 표현해서 『농사직설』의 배포 대상자는 관료들이었다. 지방 수령, 그리고 경중의 관원이 반포 대상이었다. 여기에 직접 생산자 농민이 끼어들 여지는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 「농사직설서」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王臣 이념에 의거한 수사였고, 당시 농민에게 『농사직설』을 교습해야 한다는 것은 설정하기 어려웠다. 본래 『농사직설』의 내용 자체가 老農의 지혜와 경험을 정리한 것이었고, 만약 연소한 농민이 누군가에게 農法을 배워야 한다면 가르침을 받을 대상은 관리가 아니라 우리 마을의 노농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 기사는 함길도·평안도의 감사에게 傳旨하는 내용이다. 세종은 道內가 땅은 넓고 사람은 드물어, 집집마다 土田(田土, 인용자)을 넓게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재 상황에서도 경작할 때에 힘쓰는 것은 간단하고 쉬우나 수확하는 것은 매우 많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런 상황에 '만약 他道와 같이 힘을 다하여 경작한다면(依他道竭力耕治)' 반드시 곡식이 잘되어 쉽게 풍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세종의 지적은 함길도, 평안도에서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감사의 책무는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온힘을 다하여 경작하게 하는 농사의 권장, 즉 농민이 해야 할 과업을 모두 성실하게 수행하게 유도하는 것으로 지목하는 것이었다. 함길도, 평안도 지역에 『농사직설』의 農法을 보급해야 한다는 세종의 의지는 당연히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세종은 오히려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었다.

"지난번에 『農事直說』을 撰集하여 各道에 반포하면서 '성의껏 친절하게 가르치고 일러서 농민으로 하여금 고루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고, 官家에서도 역시 農書에

69) 『世宗實錄』 권47, 世宗 12년 2월 14일 乙酉 (3-216): 頒農事直說, 于諸道監司州郡府縣, 及京中時散二品以上. 上曰: "務農重穀, 王政之本, 故予每惓惓於農事也."

의하여 농사를 지어서 백성으로 하여금 법으로 본받게 하라'고 하였다. 대개 人情이 예전 관습을 편안하게 여기고 새 법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일러도 준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만일 인심이 따르려고 하지 않거든 반드시 억지로 시키지 말고, 마땅히 점차로 잘 달래어 農書와 他道에서 행하는 방법에 의하여 경작하게 하라. 또한 官家로 하여금 또한 지난날의 諭示한 바에 의하여 갈고 심은 것과 가을에 수확한 수량을 모두 자세히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70]

위 기사에서 밑줄 친 부분은 앞서 『農事直說』을 撰集하여 各道에 반포하면서 세종이 내린 왕명의 내용을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성의껏 친절하게 가르치고 일러서 농민으로 하여금 고루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고, 官家에서도 역시 農書에 의하여 갈고 심어서 백성으로 하여금 법을 받게 하라는 것이었다. 이 세종의 왕명 가운데 『농사직설』의 내용을 농민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왕의 권농 명령의 진솔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官家에서 農書에 의거하여 농사를 지어서 백성들이 법으로 본받게 하라는 대목이다.[71] 관가에서 農書에 의거하여 농사를 지을 때, 참고할 농서는 전후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농사직설』이다. 그렇다면 관가의 농사를 감독하고 이끌어 나가면서 수확한 후에 보고해야 할 책무를 담당하는 것은 守令으로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농사직설』을 제도에 반포하면서 내린 세종의 왕명은 수령에게 관가의 농사, 아마도 官屯田으로 추정되는 곳에서의 농사짓기를 『농사직설』에 의거하되 수령이 監農을 담당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 자료는 水稻의 파종에서 早種이 요긴하다는 점을 세종이 강조하면서,

---

70) 『世宗實錄』 권76, 世宗 19년 2월 15일 乙亥 (4-55); ○傳旨咸吉、平安道監司: 道內地廣人稀, 家家廣占土田, 耕耘之際, 用力簡易, 而所收倍多. 若依他道竭力耕治, 則意必禾穀益盛, 易致豐稔. 曩者撰集農事直說, 頒諸各道, 令諄諄敎諭, 俾農民無不周知, 官家亦依農書耕種, 令民取法. 大抵人情, 安於故常, 不樂新法, 雖勤敎諭, 亦不肯遵. 若人心不欲, 不必强使爲之, 宜漸次善誘, 俾依農書及他道用功, 使之耕作. 且令官家, 亦依曩日所諭耕種秋成, 悉啓所收之數.

71) '농사를 지어서'로 번역한 원문은 '耕種'이다. 그런데 耕種이 기경과 파종을 결합시킨 단어이지만, 耕食, 稼穡 등의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경종 자체가 農事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農桑輯要』, 『四時纂要』 등의 관련 구절을 인용하고 여기에다가 『농사직설』 種稻에 수록되어 있는 '절기에 늦게 耕種한 것은 不實하다'는 原註를 인용하면서 내린 왕명이다. 이와 더불어 세종은 今人이 이미 징험한 일로 언급하기를 '早種하면 所出이 倍나 많아지고, 晩種하면 禾穀이 盛長하여도 소출이 적다'라는 주장도 적극 펼치고 있었다.[72] 『농사직설』에 '절기에 늦게 耕種한 것은 不實하다'라고 아주 간략하게 서술된 것은 실제로 금인의 징험한 바로 언급한 내용과 같이 매우 상세하게 서술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었지만, 『농사직설』은 '直說'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나오는 세종의 왕명은 한편으로는 농사에서 早種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감사와 수령이 억지로 시기를 각박하게 독촉하는 것의 위험성도 지적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세종이 강조한 바는 바로 다음 내용이었다.

> "卿(각도 감사)은 마땅히 이 뜻을 몸받아 守令들로 하여금 그 절후를 살피고, 백성의 노동력을 헤아려서 徭役을 절감하고 일찍 농사일을 권장하여 (농사의) 적기를 잃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앞서 諭示한 秋耕하는 방법을 수령들로 하여금 모두 이를 써서 左右에 걸어 놓고 상시 눈에 접하면서 때맞추어 농사일을 권장하게 하라." 하였다.[73]

위의 기사 뒷부분에서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세종의 주요한 관심은 수령들이 농법(농업기술)에 익숙한 상황에서 농민들에게 권농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연히 수령은 위 인용문 앞에 나오는 『농사직설』 등의 농서의 내용, 금인(농민)의 징험 등에 대해서도 어지간히 숙지하고 있어야 했고, 결정적으로 세종이 수시로 내린 諭示(위에서는 秋耕 기술)까지 알고 있어야 했다.

---

72) 『世宗實錄』 권82, 世宗 20년 7월 5일 丁亥 (4-152): ○丁亥/傳旨各道監司: 『農桑輯要』云: "水稻三月種者爲上時, 四月上旬爲中時, 仲旬爲下時. 早稻二月半爲上時, 三月爲中時. 黍穄三月上旬爲上時, 四月上旬爲中時." 『四時纂要(四時纂要)』云: "穀種二月上旬爲上時." 『農事直說』註云: "節晩耕種者不實." 又以今人已驗之事言之, 早種則所出倍多, 晩種則禾穀盛長而所出少矣.

73) 『世宗實錄』 권82, 世宗 20년 7월 5일 丁亥 (4-152): 卿宜體此意, 使守令審其節候, 量其民力, 省徭役早勸課, 勿令失時. 其前所諭秋耕之術, 使守令幷書, 掛諸左右, 常接乎目, 以時勸課.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농사직설』편찬의 현실적인 의의는 권농의 실제 직무를 담당하고 있던 수령들에게 농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주고, 이를 통해 실제 주부군현 농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것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농사직설서」에 농법 교습의 대상으로 民(백성)이 설정되어 있지만, 이는 왕정을 통해 仁政과 德治를 실천해야 하는 天命의 대행자 국왕의 지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특정한 반포대상을 「농사직설서」에 굳이 강조하는 것이 불필요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농사직설서」는 교화의 관점에서 작성된 것이었지만, 현실적인 농법 교화의 대상자는 관료들이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농사직설』편찬의 현실적인 의의를 찾아보는 것은『농사직설』편찬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되새기는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5. 맺음말

조선왕조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필요한 생산활동 즉 農業을 중심으로 世宗代에『농사직설』이 편찬된 배경과『농사직설』편찬의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세종대에 이르러 완성된 형태가 자리잡은 농정책에서 수령을 특히 권농을 직접 수행하는 책무를 짊어지게 되었다. 수령은 자신을 보좌하는 勸農과 監考 등의 직임을 두어 권농을 실행하였다.

조선 왕조 개창 이후 조선의 서적 편찬 사업 가운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농사직설』이 편찬된 것은 바로 그 시점에 조선(한국)의 농업기술을 정리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15세기 초반에『農事直說』이 편찬될 수 있었다. 그리고『농사직설』의 農事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農法 이외에 다른 주장을 전혀 배제하고 있었다.

『농사직설』은 당대 하삼도 지역 老農의 농사 경험, 견문, 지혜를 문자화한 것이었다. 농민이 실제로 개발하고 전승한 농법을 기록한 것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농사직설』의 보급 대상은 농민이 아니었다. 세

종대 권농의 실시를 담당하는 책무를 지닌 수령과 수령으로 나서야 할 관료층이 바로 『농사직설』의 반포 대상이었다. 이점에서 세종대 권농의 실시와 『농사직설』 편찬이 서로 맞물리는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농사직설』이 편찬된 이후 조선의 농서 편찬에서 『농사직설』이 불후의 典範으로 간주되었다.

논문투고일(2021. 5. 14), 심사일(2021. 5. 24), 게재확정일(2021. 6. 10)

참고문헌

강제훈, 2002『朝鮮初期 田稅制度 硏究』,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금재원, 2011「秦漢代 擇日術의 유행과 보편화 과정」,『中國古中世史硏究』25, 中國古中世史學會.

김만태, 2009「한국 택일 풍속의 전승양상과 특징」,『한국정신문화연구』32-1(통권 114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상태, 2010「「農事直說」의 편찬과 보급에 대한 재검토」,『한국민족문화』36,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金榮鎭, 1983『農林水産 古文獻備要』, 韓國農村經濟硏究院.

_____, 1984『朝鮮時代前期農書』, 韓國農村經濟硏究院.

김영진, 2004「해제(解題)」,『山家要錄』고농서국역총서 8, 농촌진흥청.

김영진·이길섭, 2008「개화기 농서의 편찬 배경과 편찬 동기」,『농업사연구』7-2, 한국농업사학회.

金容燮, 1980「農書小史」,『農書』1 (韓國近世社會經濟史料叢書3), 아세아문화사.

_____, 1984「조선초기의 勸農政策」,『동방학지』42, 국학연구원.

_____, 1986「『農事直說의 편찬과 기술」,『애산학보』4, 애산학회(1988,『朝鮮後期農學史硏究』재수록).

_____, 1988「『農書輯要』의 農業技術」,『朝鮮後期農學史硏究』, 一潮閣.

_____, 1988『朝鮮後期農學史硏究』, 一潮閣.

_____, 2000「高麗時期의 量田制」,『韓國中世農業史硏究』, 知識産業社.

_____, 2000「世宗朝의 農業技術」,『韓國中世農業史硏究』, 知識産業社.

_____, 2000「高麗刻本『元朝正本農桑輯要』를 통해서 본『農桑輯要』의 撰者와 資料」,『韓國中世農業史硏究』, 지식산업사.

金泰永, 1983『朝鮮前期土地制度史硏究』, 지식산업사.

박진우, 1988「조선초기 面里制와 村落支配의 강화」,『韓國史論』20, 서울대 국사학과.

염정섭, 2000「조선시대 農書 편찬과 農法의 발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_____, 2002「杏村 李嵒의『農桑輯要』도입과 의의」,『행촌 이암의 생애와 사상』, 일지사.

_____, 2003「세종대(世宗代) 농정책(農政策)의 전개와 의의」,『애산학보』29, 애산학회.

_____, 2014「고려의 중국 農書·曆書·擇日書의 도입과「吉凶逐月橫看 木板」의 성격」,『한국중세사연구』38, 한국중세사학회.

_____, 2014「한국 농서 번역의 현황과 전망」,『고전번역연구』5, 韓國古典飜譯學會.
吳仁澤, 1988「『農書輯要』의 耕種法研究」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王毓瑚 編著, 天野元之助 校訂, 1975『中國農學書錄』, 龍溪書社.
魏恩淑, 1988「12세기 농업기술의 발달」『釜大史學』12, 부산대 사학과.
_____, 1998『高麗後期 農業經濟研究』, 도서출판 혜안.
_____, 2000「『元朝正本農桑輯要』의 농업관과 간행주체의 성격」,『한국중세사연구』8, 한국중세사학회.
李景植, 1998『朝鮮前期土地制度研究』(Ⅱ), 지식산업사.
李光麟, 1961『李朝水利史研究』, 韓國研究院.
_____, 1965「『養蠶經驗撮要』에 대하여」,『歷史學報』28, 역사학회.
_____, 1974「『養蠶經驗撮要』解題」,『書誌學』6, 한국서지학회.
李樹健, 1984『한국중세사회사연구』, 일조각.
李丞宰, 1992「『農書輯要』의 吏讀」,『震檀學報』74. 진단학회.
李宗峯, 1991「高麗刻本『元朝正本農桑輯要』의 韓國農學史上에서의 위치」,『釜山史學』21, 부산사학회.
李春寧, 1964『李朝農業技術史』, 韓國研究院.
李泰鎭, 1984「세종대의 농업기술정책」,『세종조문화연구』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_____, 1986「세종대의 천문연구와 농업정책」,『애산학보』4, 애산학회.
_____, 1986『韓國社會史研究』, 지식산업사.
_____, 1989「15-16세기의 低平 低濕地 開墾 동향」,『國史館論叢』2, 국사편찬위원회.
_____, 1989『조선유교사회사론』, 지식산업사.
_____, 2002,『의술과 인구 그리고 농업기술』, 태학사,
李鎬澈, 1990「『農書輯要』의 農法과 그 역사적 성격」,『經濟史學』14, 경제사학회.
전상운, 1998『한국과학사의 새로운 이해』, 연세대학교 출판부.
전용훈, 2020「세종대 천문과 역법」,『조선시대 학문기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집현의 의미: 집현전 60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대 인문학 연구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자료집.
최승희, 1995「2. 유교정치의 진전」,『한국사 22-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_____, 2002『朝鮮初期政治史研究』, 지식산업사.

Abstract

The significance of promoting agriculture and organizing farming methods during reign of King Sejong

Yeom, Jeong Sup *

This thesis examined the background of the compilation of *Nongsajikseol*(Straight Essay on Farming) and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Nongsajikseol*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We focused on the production activities that are crucially necessary to maintain the Joseon Dynasty system. In the agricultural policy, which was completed King Sejong, local government official was especially responsible for carrying out promoting agriculture activities. The head of the department carried out the activities by appointing himself to assist in farming and management.

After the founding of the Joseon Dynasty, the reason that *Nongsajikseol* was compiled at the national level among the book editing projects of Joseon was because it was urgently required to organize the agricultural technology of Joseon (Korea) at that time. For this reason, *Nongsajikseol* could be compiled in the early 15th century. In addition, other arguments were excluded at all other than the method of dealing directly with the agricultural practice.

Nongsajikseol was a textualization of the farming experience, knowledge, and wisdom of old expert farmer in the Hasamdo region of the day. It had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recorded the farming methods that the farmers actually developed and transmitted. For this reason, farmers were not the target of the spread of *Nongsajikseol.* The leader and the bureaucrats who were responsible for the promoting agriculture activities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were the targets of dissemination of the *Nongsajikseol*. From this point of

* Professor, Hallym University.

view, it is thought that the implementation of promoting agriculture activities and the compilation of *Nongsajikseol* can give mutual significance. After the compilation of *Nongsajikseol*, it was regarded as the ancestor of scripture in the compilation of agricultural books in Joseon.

Key words : local government official, promoting agriculture, farming methods, old expert farmer, *Nongsajikseol* (Straight Essay on Farming)